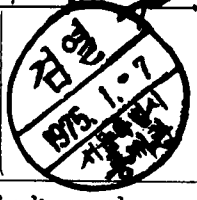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 제415-3	(전화번호 75-6593)	전 결 규정 / 조 2 항 부시장 전 결 사항
처리기간	제2 부시장 재		
시행일자	1975. 1. 7		
보존년한	제2 부시장		
보조기관	도시계획국장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정</div>	협 법무담당관 (24인하) 시민과장 문서관리계장 종합계획계장 지역계획계장
	도시계획과장		
	재개발계장		
기안책임자	김약재	74. 12. 24.	조
경유수참조	각안참조	발신	통제
제 목	도시계획(재개발구역및 특정가구정비지구) 지적(변경) 고시		
제1안 내부결재			
1. 서울시고시 제51호(74.4.23)로 지적(변경) 고시된 태평로			
2가 재개발 구역및 특정가구정비지구중 제1,2지구에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기 별첨변경조서및 도면과같이 지구계를 일부변경코져 하는바,			
2. 본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10조및 건설부고시 제123호(73.4.4)로 서울특별시광역계 권한위임된 사항이므로 제2안과같이 지적(변경) 고시코져 합니다.			
가. 변경사유			
건설부고시 제204호(74.6.29)로 실시계획인가되어			
현재 재개발사업시행중인 태평로2가 제2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중앙			
산업주식회사의 토지를 제1지구내에 편입되어있는 제2지구 재개발			
사업 시행자(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의 토지와 상호교환키로 합의하고			
교환면적을 조정분할하기 위하여 양사 공동으로 요청하여기 시행중인			

0201-1-8A (갑)  
1969. 11. 10 승인

9 기안지이면도 사용할지



정서

판인

발송

90mm x 138mm (2급인쇄용지 6.9g/m<sup>2</sup>)  
청 (1,000,000매 인쇄)

저가발 사업의 원활을 가하기 위하여 요청대로 지구계 변경로 제함.

나. 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지구	면적	비고
당초	태평로2가 1지구	태평로2가 서소문동 각 일부	저가발구역 특정가구정비지구	7,583 <sup>M</sup>	
변경	"	"	"	7,716 <sup>*</sup>	지구계변경 +133 <sup>M</sup>
당초	태평로2가 2지구	태평로2가 일부	저가발구역	8,153 <sup>*</sup>	
변경	"	"	"	8,020 <sup>*</sup>	지구계변경

첨부. 1. 도면 1부.

2. 도시계획위원회심의안 및 회의록각 1부  
제2안 고시안

고시안심사 1974.12.29 제 204 호  
 심사자 법제처 제 1부 5명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전결**

도시계획(저가발구역 및 특정가구정비지구) 지적(변경) 고시

1. 서울시고시 제51호(74.4.23)로 지적(변경) 고시한 태평로 2가 저가발구역 및 특정가구정비지구 중 제1,2 지구에 대하여 일부 지구계를 변경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고시 제723호(73.4.4)의 규정 여 의거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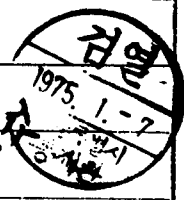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중구청 시민봉사실 여 비치하여 노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계획(저가발구역 및 특정가구정비지구) 지적(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지구	면적	비고
당초	태평로2가 1지구	태평로2가 서소문동 각 일부	저가발구역 특정가구정비지구	7,583 <sup>M</sup>	
변경	"	"	"	7,716 <sup>*</sup>	지구계변경
당초	태평로2가 2지구	태평로2가 일부	저가발구역	8,153 <sup>*</sup>	
변경	"	"	"	8,020 <sup>*</sup>	지구계변경

\* 도면은 서울 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중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제3안	
수신 건설부장관	발신 시장
참조 주택도시국장	
제목 위외같음	
1. 서울특별시고시 제51호(74.4.23)로 지적(변경)고시된 태평로2가 재개발 구역및 특정가구정비지구중 제1,2지구에대하여 시행중인 제2지구의 재개발 사업의원활을 기하고져 별첨도서와같이 일부지구계를 변경하고 지적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변경조서및 도면각1부. 끝.	
제4안	
수신 중구청장	발신 시장
제목 위와같음	
1. 서울시고시 제51호(74.4.23)로 지적(변경)고시된 태평로 2가 재개발및 특정가구정비지구중 제1,2지구에대하여 별첨고시문 시본과같이 지적변경고시 하였기 통보하니 관계도서를 정리 귀구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자에게 보이게하고 도시 계획 업무수행에 착오없기바람.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변경조서및 도면각1부.	
제5안	
수신 총무처장관(서울특별시:공보실장)	발신 시장(과장)
제목 관(시)보 게재의뢰	
1. 서울특별시고시 제51호(74.4.23)로 지적(변경)고시된 당시 태평로2가 재개발 구역및 특정가구정비지구중 제1,2지구에대하여 일부 지구계를 변경, 지적고시하였으므로 다음과같이 관(시)보 게재	



기안지이면도 사용할것

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시)보 게재구분: 고시	
나. 관(시)보 게재건명: 도시계획 (재개발구역및 특정가구 정비지구) 지적(변경) 고시	
다. 법적근거: 도시계획법 제13조	
첨부. 고시문 시본 2부(1부) 끝.	
제6안	
수신 건축과장	발신 과장
제목 위와같음	
1. 서울특별시고시 제51호 (74.4.23) 로 지적(변경) 고시된 태평로2가 재개발 구역및 특정가구정비지구중 제1,2 지구에 대하여 별첨조서및 도면과같이 일부 지구계를 변경하고 지적고시하였기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고시문 시본 1부	
2. 변경조서및 도면각7부. 끝.	
제7안	
수신 수신처참조	시장
제목 위와같음	
1. 동방건본 제30호 (74.11.7) 의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로 요청하신 태평로2가 제1,2 지구에 대한 지구계 변경에 대하여는 귀하의 요청대로 지구계 변경하고 별첨과같이 고시 하였기 통보하니 시업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고시문 시본 1부	
2. 변경조서및 도면각7부	
수신처: 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동 58-7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	

시안지외면도사용할시  
1. 1. 7  
2. 1. 7  
3. 1. 7  
4. 1. 7  
5. 1. 7  
6. 1. 7  
7. 1. 7  
8. 1. 7  
9. 1. 7  
10. 1. 7  
11. 1. 7  
12. 1. 7  
13. 1. 7  
14. 1. 7  
15. 1. 7  
16. 1. 7  
17. 1. 7  
18. 1. 7  
19. 1. 7  
20. 1. 7  
21. 1. 7  
22. 1. 7  
23. 1. 7  
24. 1. 7  
25. 1. 7  
26. 1. 7  
27. 1. 7  
28. 1. 7  
29. 1. 7  
30. 1. 7  
31. 1. 7  
32. 1. 7  
33. 1. 7  
34. 1. 7  
35. 1. 7  
36. 1. 7  
37. 1. 7  
38. 1. 7  
39. 1. 7  
40. 1. 7  
41. 1. 7  
42. 1. 7  
43. 1. 7  
44. 1. 7  
45. 1. 7  
46. 1. 7  
47. 1. 7  
48. 1. 7  
49. 1. 7  
50. 1. 7  
51. 1. 7  
52. 1. 7  
53. 1. 7  
54. 1. 7  
55. 1. 7  
56. 1. 7  
57. 1. 7  
58. 1. 7  
59. 1. 7  
60. 1. 7  
61. 1. 7  
62. 1. 7  
63. 1. 7  
64. 1. 7  
65. 1. 7  
66. 1. 7  
67. 1. 7  
68. 1. 7  
69. 1. 7  
70. 1. 7  
71. 1. 7  
72. 1. 7  
73. 1. 7  
74. 1. 7  
75. 1. 7  
76. 1. 7  
77. 1. 7  
78. 1. 7  
79. 1. 7  
80. 1. 7  
81. 1. 7  
82. 1. 7  
83. 1. 7  
84. 1. 7  
85. 1. 7  
86. 1. 7  
87. 1. 7  
88. 1. 7  
89. 1. 7  
90. 1. 7  
91. 1. 7  
92. 1. 7  
93. 1. 7  
94. 1. 7  
95. 1. 7  
96. 1. 7  
97. 1. 7  
98. 1. 7  
99. 1. 7  
100. 1. 7